

손해배상 공제사업규칙

2002.12.09.	제정	2004.06.29.	개정
2004.10.15.	개정	2004.12.27.	개정
2005.12.30.	개정	2006.12.22.	개정
2007.12.27.	개정	2008.09.19.	개정
2009.01.01.	개정	2009.12.30.	개정
2010.12.28.	개정	2012.01.01.	개정
2012.12.31.	개정	2013.12.31.	개정
2014.12.30.	개정	2015.03.20.	개정
2015.12.29.	개정	2016.12.08.	개정
2017.12.15.	개정	2018.07.30.	개정
2018.12.26.	개정	2019.06.25.	개정
2019.12.19.	개정	2020.05.25.	개정
2020.11.18.	개정	2020.12.28.	개정
2021.01.12.	개정	2021.12.15.	개정
2022.11.24.	개정	2022.12.29.	개정
2023.01.20.	개정	2023.03.03.	개정
2023.07.28.	개정	2023.08.24.	개정
2023.12.27.	개정	2024.12.11.	개정
2025.05.15.	개정	2025.06.27.	전부개정
2025.10.02.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시행하는 손해배상 공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해배상 공제사업”이란 회원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영조물의 관리하자 또는 업무상 과실,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보상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회원”이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정관」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공제금 또는 보험금”이란 공제금 또는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손해보험사 또는 재보험사가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4. “공제요율”이란 사고발생 가능성, 손해액 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산출된 공제회비 산정기준을 말한다.

제3조(다른 내규와의 관계) 손해배상 공제사업의 업무처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정관」이나 다른 내규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4조(업무의 분담) 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공제사업 운영규정」 제19조에 따라 회원을 대리하여 손해보험사 또는 재보험사(이하 “보험사”라 한다.)와 단체보험 또는 재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성립에 필요한 보험료를 공제회의 재원으로 우선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무 당사자는 회원과 보험사가 되며, 공제회는 공제회비의 징수 및 권리·의무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업무를 지원하고 보험사는 손해의 조사, 공제금 또는 보험금(이하 “공제금”이라 한다.)의 결정 및 지급, 보험에 관련된 소송의 대행, 손해예방지도업무 등을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에 관련된 권리·의무 당사자는 회원과 공제회가 되며, 공제회는 공제회비의 징수, 손해의 조사, 공제금의 결정 및 지급, 재보험 가입 등 위험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보험사는 공제회가 출재한 위험을 인수한다.

④ 업무의 분담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보험사와 체결하는 손해배상 공제사업 업무협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2장 공제등록 및 회비산정

제5조(공제등록 대상) 「공제사업 운영규정」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6호에 따른 구체적인 공제등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조율배상공제 등록대상

- 가. 특별시,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소, 출장소 등의 청사
- 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학교
- 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모·부자복지시설, 보호시설, 재활시설 등 그 밖의 복지시설
- 라. 각종 휴양시설
- 마. 읍·면·동 복지회관, 마을회관,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
- 바. 체육관, 육상경기장, 야구장 등 체육시설
- 사. 농·임·수산가공시설, 육묘시설, 집·출하시설
- 아. 상·하수도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생활환경시설
- 자. 공원시설
- 차. 항만시설
- 카. 도로시설
- 타. 주차장시설
- 파. 청소년수련시설
- 하. 그 밖의 건축물 및 공작물 등 공제등록이 가능한 시설물

2. 업무배상공제 등록대상

- 가. 인감(변경)신고 및 인감증명 업무(외국인인감 포함)
- 나. 주민등록(전출·입, 말소, 증 및 등·초본발급)업무
- 다. 가족관계등록(출생·사망신고 및 등·초본발급)업무
- 라. 차량등록(이륜차 포함)업무

- 마. 여권 업무
- 바.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등 업무
- 사. 지방세 제증명 업무
- 아. 보건소 민원업무

자. 그 밖의 공제등록이 가능한 업무. 단, 각종 인·허가 및 재무·회계·세금징수업무는 서류발급업무에 한함

3. 그 밖에 손해배상공제 등록대상

- 가.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규칙, 조례 등에 의거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공기관의 업무 또는 행위
- 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중대재해
- 다.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법률상 배상책임 등 각종 사이버 위험

제6조(공제등록 신청) 「공제사업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회원이 공제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 약관에서 정한 공제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7조(공제회비 산정기준) ① 「공제사업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른 공제회비는 공제등록 대상의 기준값, 보상한도 및 특별담보 등에 공제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공제요율은 [별지 제1호 손해배상공제 요율서](#)에 따르며, 공제요율은 손해율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02.>
③ 제2항의 요율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공제요율에 대하여는 보험사와 협의한 협의요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3장 공제금 지급

제8조(회원의 사고통보) ① 「공제사업 운영규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13조 약관에서 정하는 사고접수양식을 작성하여 공제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사에 통보할 수 있다.

1.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때
 2.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 받은 때
 3. 수사기관으로부터 형사사건에 관한 고소, 고발, 진정, 인지, 내사, 입건, 출석요구 등을 받아 형사절차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는 때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
 5. 개인정보유출 등 사이버사고 또는 범죄가 발생한 때
- ② 제1항에 따른 사고접수양식 작성 시에는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피해금액, 피해자의 인적사항, 사고상황, 증인(목격자)이 있을 경우 그 주소 및 성명 등 사고 관련 정보를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
- ③ 회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각 호에 의한 통지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늘어난 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 ④ 공제회가 보험사와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사고조사 및 공제금 지급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제1항에 의한 회원의 사고통보 사실과 그 내용을 자체 없이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제9조(공제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 ① 「공제사업 운영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회원이 공제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사에 제출할 수 있다.

1. 공제금 청구서
 2. 공제회가 발급한 손해배상 공제등록증권 사본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한 증명서류
 4. 그 밖의 공제회 또는 보험사가 요구하는 서류
-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공제금 지급신청서류를 접수받은 경우 자체 없이 지급할 공제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공제금이 결정되면 7영업일 이내에 이를 지급한다. 다만,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보험사에 전달하여 보험사가 공제금 지급액을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제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같은 기간 내에 마칠 수 없거나 회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제회 또는 보험사가 추정한 공제금의 50% 이상을 가지급 공제금으로 우선 지급할 수 있다.

- ④ 제2항의 공제금 지급액 결정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금에 지연배상금으로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공제금지급의 범위) 손해배상 공제사업의 공제금지급 범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회원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2. 회원이 지출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고 발생한 때에 회원이 손해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만, 배상책임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비용 중에서 응급처치 및 병원후송 등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공제회 또는 보험사의 사전 동의를 받은 비용에 한한다.
 - 나. 회원이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
 - 다. 회원이 공제회 또는 보험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라. 공제등록신청서상 공제금 보상한도액내의 공탁보증보험료
 - 마. 회원이 손해배상청구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 등에 대하여 공제회 또는 보험사의 요구를 따르기 위한 비용
3. 특별약관에 의하여 공제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약관에서 정하는 공제금

제11조(공제금 보상한도액) ① 공제회 또는 보험사가 지급하는 공제금 보상한도액은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으로 한다. 다만, 공제등록증권에 자기부담금이 명시된 경우에는 1회 사고 때에 보상하는 금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때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지급한다.

- ② 공제회 또는 보험사는 제10조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을 전액 보상한다. 다만,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은 그 비용과 제1항에 의한 공제금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한다.

제12조(회원의 통지의무) 회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동사항을 서면으로 공제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1. 공제등록 영조물의 증·감 및 소유권이 변동된 때
2. 공제등록 민원업무 직위 및 인원 수가 변동된 때
3. 그 밖에 공제등록 조건 등 내용의 변동이 생긴 때

제4장 보 칙

제13조(약관) ① 공제회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 공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약관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회원 및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약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02.>

1. 영조물배상공제약관 [별첨 1]
2. 업무배상공제약관 [별첨 2]
3. 행정종합배상공제약관 [별첨 3]
4.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약관 [별첨 4]
5. 사이버종합공제약관 [별첨 5]

③ 제1항의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 등을 준용하며 그 외의 사항은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사와의 협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 칙<규칙 제105호, 2002.12.9.>

이 규칙은 200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19호, 2004.6.29.>

이 규칙은 2004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20호, 2004.10.15.>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21호, 2004.12.27.>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30호, 2005.12.30.>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41호, 2006.12.30.>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56호, 2007.12.27.>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62호, 2008.9.19.>

이 규칙은 2008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65호, 2009.1.1.>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69호, 2009.12.30.>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82호, 2010.12.28.>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96호, 2011.12.16.>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216호, 2012.12.31.>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238호, 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252호, 2014.12.30.>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258호, 2015.3.20.>

이 규칙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267호, 2015.12.29.>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283호, 2016.12.08.>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310호, 2017.12.15.>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332호, 2018.07.30.>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409호, 2018.12.26.>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429호, 2019.06.25.>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447호, 2019.12.19.>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454호, 2020.5.25.>

이 규칙은 202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457호, 2020.5.25.>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463호, 2020.12.28.>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468호, 2021.01.12.>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468호, 2021.12.15.>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512호, 2022.11.24.>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515호, 2022.12.29.>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522호, 2023.01.20.>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528호, 2023.03.03.>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540호, 2023.07.28.>

이 규칙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영조물배상공제 보통약관 제11조 “별첨 1-1”의 V. 특약공제회비 ⑯ 승강기사고담보 특약의 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542호, 2023.08.24.>

이 규칙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548호, 2023.12.27.>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562호, 2024.12.11.>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569호, 2025.05.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영조율배상공제 보통 약관 제11조 “별첨 1-1”의 V. 특약공제회비의 ④ 어린이놀이시설의 개정은 2025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은 제1조(시행일) 이후의 신규·변경·갱신등록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규칙 제576호, 2025.0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공제등록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다.

부 칙<규칙 제593호, 2025.10.02.>

이 규칙은 2025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